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[이인식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553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4. 5. 28.

발 의 자 : 이인식 의원

찬 성 자 : 고성미 의원

도병두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
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 
기회 보장 및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 
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(안 제4조 및 제5조)
- 다.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(안 제6조 및 제7조)
- 라.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(안 제8조 및 제9조)
- 마.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및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(안 제10조 및 제11조)

바.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지원 및 업무의 위탁(안 제12조 및 제13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
- 2)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
- 3)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15조의2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2024. 5. 29. ~ 2024. 6. 5.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예술인”이란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문화예술”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 및 결과물을 말한다.
3. “문화시설”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
2.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·전시·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
3.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, 공연 등의 창작물(이하 “창작물”이라 한다)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
4.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
5.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
6.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

7.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

8.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

9.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

10.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

2.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
3.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

4.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판로 지원

5.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.

제8조(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)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

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)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)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)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)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업무의 위탁 등)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

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3. 3. 28.] [법률 제18987호, 2022. 9. 27.,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## □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3. 1. 28.] [법률 제18334호, 2021. 7. 27., 일부개정]

제24조(문화·예술활동의 차별금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·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·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제4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·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·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·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·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·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[시행 2023. 12. 21.] [법률 제19480호, 2023. 6. 20., 일부개정]

제15조의2(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



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·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공연·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